

1930년대 전반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의 사회운동과 그 역사적 의미

미즈노 나오키*
(조은진 역)**

[초 록]

식민지 지배기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은 조선인과는 동떨어진 생활환경 속에서 식민지 지배자로서 존재했는데,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전반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기소되는 일본인이 비록 소수지만 등장했다. 재조일본인 가운데도 직공, 노동자로서 일하는 자가 일정한 비율로 존재했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이도 있었다. 또한 조선에서 태어나거나 조선에서 자란 재조일본인 2세가 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인과 접할 기회를 가져 조선인을 대등한 존재로 여기는 동시에 식민지 사회의 모순에 눈을 돌려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 교토대학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재조일본인, 사회운동, 치안유지법, 탈식민주의
Japanese Residents in Korea, Social Movement, Peace Preservation Law,
De-colonialism

여러 자료에 따르면 1929년에서 1934년 사이에 치안유지법 위반 용의로 58명의 일본인이 검거되어 그 가운데 34명이 기소되었다. 이들 검거 사건은 일본인 단독 활동, 일본인이 주체가 된 그룹 활동, 조선인이 주체가 된 운동에 참가 등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검거자 대부분이 직공, 고원·용인 등 중하층 노동자이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정에서 자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사회운동은 식민지 지배에 비판적인 인식으로부터 그 변혁을 지향하는 주장이나 일본의 대륙침략에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재조 일본인의 사회운동은 극히 미약하여 식민지 지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식민지 사회에서 지배자의 지위에 있는 재조일본인의 일부가 식민지 지배를 비판·부정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과 그 역사적 의미는 인식·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1. 시작하며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 하 조선에서 생활한 일본인(在朝日本人)과 관련된 사회운동의 양상을 밝히고, 그 의의를 생각하고자 한다.

재조일본인은 식민지 사회에서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식민지 사회의 모순에 관심을 가지는 일본인도 존재했다. 특히 식민지 사회에서 하층 노동자로 일하거나, 가정환경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라 조선인과 접촉할 기회가 있던 식민자 2세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 중 조선인을 대등한 존재로 여기거나 공감을 보이는 사람도 등장했다. 이러한 일본인에 의해 식민지 사회의 개혁이나 변혁을 꾀하는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배 당국은 이와 같이 식민지 지배질서를 뒤흔들지도 모르는 재조일본인의 운동을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필연적으로 운동은 ‘비밀결사’로 전개되었으며 치안유지법에 의하여 탄압을 받

았다.

재조일본인의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겨져 있다.

첫째, 재조일본인 사회운동의 전체적인 양상이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다. 치안유지법으로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된 일본인 중 비교적 잘 알려진 사례는 磯谷季次, 上甲米太郎, 三宅鹿之助 3명일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집필한 수기나 연구서 그리고 연구 논문에 사건의 내용과 역할, 운동에 관계하게 된 경위, 이들의 사상과 의식 등이 꽤 상세히 밝혀져 있다.¹⁾

그러나 조선에서 사회운동에 관련되어 치안유지법으로 검거된 일본인은 이 세 사람 이외에도 상당한 수에 이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전성현은 “조선인과 ‘함께’ 또는 식민자가 아닌 식민지민의 삶을 살고

- 1) 磯谷季次の 자서전으로는 磯谷季次(1949), 『植民地の獄』, 郷土書房; 磯谷季次(1980), 『朝鮮終戦記』, 未来社; 磯谷季次(1984), 『わが青春の朝鮮』, 影書房이 있는데 마지막 책은 한국어 번역이 있다[이소가야 스에지(1988), 『우리 청년의 조선: 일제하 노동운동의 기록』, 사계절]. 또한 최근에는 양지혜(2015), 「‘식민자 사상범’과 조선: 이소가야 스에지 다시 읽기」, 『역사비평』 110; 변은진(2018), 『자유와 평화를 꿈꾼 ‘한반도인’ 이소가야 스에지』, 아연출판부(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등의 연구가 나와 있다.

上甲米太郎에 대해서는, 新藤東洋男(1981), 『在朝日本人教師: 反植民地教育運動の記録』, 白石書店, 高麗博物館編; 上甲まぢ子 外 著(2010), 『上甲米太郎: 植民地・朝鮮の子どもたちと生きた教師』, 大月書店; 이준식(2006), 「재조(在朝) 일본인 교사 쇼코(上甲米太郎)의 반제국주의 교육노동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등이 있다.

三宅鹿之助에 대해서는, 井上學(2006), 「一九三〇年代日朝共產主義者の邂逅 — 三宅鹿之助と李載裕」, 『社会運動の昭和史』, 白順社; 전명혁(2006), 「1930년대 초 코민테른과 미야케(三宅鹿之助)의 정세인식」, 『역사연구』 16; 김경일(2015), 「지배와 연대의 사이에서 — 재조일본인 지식인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 『사회와 역사』 105. 그 외 古屋貞雄·三宅鹿之助·渡部学·佐藤勝巳(1966), 「暗黒下の日朝人民の連帯 — 昭和初期日本人先覚者の体験を聞く」, 『朝鮮研究』 53에서 스스로의 체험을 말하고 있다.

자 한 재조일본인으로 발굴된 인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 파악 가능한 이들은 대부분 조선인과 함께 민족해방운동에 뛰어든 인물들이고 모두 조선인과 함께한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검거된 총 19명 정도가 확인된다고 한다.”²⁾ 고 논했다. 해당 서술이 어떤 자료에 의거한 것인지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검거자 19명이라는 숫자는 실제보다 꽤 적은 것이다.

양지혜는 “식민지기 ‘내선인(內鮮人: 일본인·조선인) 합동 사상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 9건”이라고 하며 “식민지기 조선인과 일본인이 연대한 9건의 반제국주의운동 모두 1930년부터 1934년까지의 비교적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일본인은 모두 19명이다.”³⁾라고 썼지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일본인이 19명이었다는 것은 역시 실제보다 적은 숫자다.

또한 식민지기 감시대상인물카드를 조사한 이애숙에 따르면, 4,823명분의 카드에는 31명의 일본인 카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비밀결사’ 사건(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관련자는 22명이라고 되어있다.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일본인 숫자를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은 김경일의 논문이다. 김경일은 “1925~1935년 사이 치안유지법으로 검거된 일본인은 89명이고 이중에서 33명이 기소되었다.”고 서술했지만 그 근거를 명기하지는 않았다.⁵⁾ 김경일이 이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일본인이 포함된 검거사건 수나 검거자 수에 대해서는 1989년에 발표된 園部裕之의 연구⁶⁾가 있다. 園部の 논문에서는, 1930년부터 1935년까지 18건의 사건으로 일본인 29명이 검거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

2) 전성현(2015), 「식민자와 식민지민 사이, 재조일본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역사와 세계』 48, p. 62.

3) 양지혜(2015), p. 349.

4) 이애숙,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소개」(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ia.html), 2020. 3. 31. 검색.

5) 김경일(2015), p. 295.

6) 園部裕之(1989), 「在朝日本人の参加した共産主義運動」,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6.

는 치안유지법이 아니라 출판법에 위반된 사건이나, 실제 검거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園部の 연구는 고등법원 검사국의 『思想月報』, 『思想彙報』와 일본어신문 『京城日報』를 자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자료상황에서 보자면 큰 한계가 있다. 일본인이 관련된 검거사건과 검거자의 이름을 밝힌 점에서 선구적인 연구지만 기소 여부 및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재조일본인이 운동에 참가한 동기나 그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운동에 관여한 재조일본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점이다. 재조일본인 사회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관계하다 검거된 일본인 숫자를 밝히는 데 그치지 말고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식민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생활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등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탄압한 당국 측의 자료라는 한계는 있지만, 검거된 재조일본인의 경력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운동에 관여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재조일본인에 관한 여러 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재조일본인을 식민지배를 아래로부터 떠받친 존재로서 파악하는 시점에서 있기 때문에, 재조일본인이 식민지배 양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도 크게 보아 식민지배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따라서 재조일본인 가운데도 지주나 회사 경영자 등 자본가 혹은 그들이 조직한 단체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조일본인이라도 모두 하나같은 존재가 아니므로 사회적으로 ‘하위 계층’에 속하는 재조일본인에 대해서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표명된 바 있다.⁷⁾ 사회운동에 관여한 일본인의 사회적인 배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하위 계층’ 재조일본인에게도 주의를 기

7) 전성현(2015), p. 66.

을일 필요가 있다.

또한 탈식민주의 과제와 관련해서 재조일본인 2세의 존재와 의식을 검토하려는 연구가 주로 문학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다수는 재조일본인 2세가 일본 패전 후에 식민지배 역사와 식민 지배자였던 스스로의 존재를 비판적으로 다시 파악하려고 했던 문학작품을 발굴해서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재조일본인 2세에 의한 탈식민주의 영위는 일본 패전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 시기에 이미 싹터 1930년대 전반에 미약하나마 사회운동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점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재조일본인의 상황을 개관하고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이외의 ‘사상사건’으로 검거된 일본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다음,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재조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을 선택하여 어떤 인물이 검거되었고, 어떠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는지, 그러한 가운데 식민지 문제는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2. 조선 출생 일본인의 증가와 계층 구성의 문제

식민지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은 전체적으로 식민 지배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다양한 면에서 우대 받았다.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의 대우와 급료는 조선인보다 높았고, 자녀들의 학교 교육도 조선인과는 동떨어진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재조일본인은 전체적으로 생활면에서 조선인과 접할 기회를 가지지 않았고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여러 면에서 우대받는 존재이면서도 식민지 사회 저변에서 일했던 일본인도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

으면서 조선인 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일본인도 있었다. 이러한 중하층 일본인 노동자나 조선인과 함께 공부하는 일본인 학생들은, 한편으로는 우월의식을 가진 지배자로서 자신의 존재의의나 존재가치를 확실히 하려는 사람이 다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사회의 모순에 눈을 돌려 자신의 처지를 조선인과 겹쳐서 이해하려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30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조선의 총인구 21,058,305명 가운데 일본인은 527,016명으로 비율로는 2.5%의 ‘소수자’ 집단이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은 154,954명으로 전체 일본인 인구의 29.4%였다.⁸⁾ 즉,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초등·중등 단계의 학교 교육을 조선에서 받은 일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 대다수는 식민지 사회의 현실을 당연시하는 의식이 몸에 배졌지만, 각각의 가정환경이나 성장과정에서 얻은 지식, 인식 등에서 식민지 사회가 가진 문제를 의식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식민지 조선에 사는 일본인은 조선인 사회와 동떨어진 생활권을 형성하여 조선인과 접촉할 기회도 거의 없었다고 여겨진다. 대다수 일본인이 조선인 사회와 교섭을 가지지 않고 생활한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일본인의 경우에는 조선인과 접촉할 기회가 비교적 많지 않았을까. 예컨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직공) 등의 경우가 그러했다고 할 수 있다. 재조일본인의 계급·계층 구성에 관해서는 이를 분석·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적어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본인 노동자의 존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1930년 국세조사에 의한 직업(소분류)별 본업 인구에서는 공업 가운데 금속공업(금속공업, 기계기구제조, 조선, 운반용구제조)에 종사하는 일본인은, 총수(남녀 합계) 3,484인 가운데 경영자와 관리자에 해당하는 ‘업주, 직원, 기술자, 감독’은 501명인데 반해, 정련(精鍊)공, 단야(鍛冶)직·단야

8) 조선총독부(1935), 『朝鮮國勢調査報告 昭和5年 全鮮編』 2, pp. 239-248.

공, 주물(鑄物)사·주조공, 선반공 등 직공으로 보이는 자는 2,983명이었다. 요컨대 경영자·관리직의 6배가량 되는 일본인 노동자가 있었다. 화학공업에서는 일본인 총수 2,377명 가운데 업주·감독 등은 512명, 직공은 1,865명이고, 방직공업에서는 일본인 총수 1,523명 가운데 업주·감독 등 468명, 직공 1,055명이었다.⁹⁾ 즉 일본인 직공 수는 금속공업에서 경영자·관리직의 약 6배, 화학공업에서는 3배 이상, 방직공업에서는 2배에 달했다.

또한 1944년에 조선총독부가 행한 인구조사 보고서는 ‘종업(從業)상 지위별’의 일본인·조선인 인구를 <표 1>과 같이 들고 있다.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의 계층구성이 완전히 달라 일본인이 식민지 사회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점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종업상 지위별’ 인구 숫자에서 일본인 유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작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 혹은 직공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영자나 관리직이 아니라 직공·노동자로서 일하는 일본인이 상당한 비율로 존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직공 혹은 ‘작업자’로서 일하는 일본인 노동자의 경우는 조선인과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는 더 이상 재조일본인의 사회계층을 분석·검토하지 않겠지만, 조선 사회에 살면서 사회운동과 관계를 가진 일본인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서, 조선에서 낳거나 자란 재조일본인이 늘어난 것, 그리고 재조일본인 가운데도 노동에 종사하고 그를 통해 조선인과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진 자가 일정 정도 있었던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9) 위 책, pp. 250-254.

<표 1> 종업(從業)상 지위별·민족별 인구(1944년)

종업상 지위	일본인				朝鮮人			
	남	여	계	비율 (무업자 제외) (%)	남	여	계	비율 (무업자 제외) (%)
경영자	3,412	253	3,665	1.5	7,151	385	7,536	0.1
사무자	59,357	14,344	73,701	30	172,422	10,166	182,588	1.8
기술자	14,486	352	14,838	6	27,901	366	28,267	0.3
작업자	74,564	34,829	109,393	44.3	6,292,704	3,626,908	9,919,612	96.6
공무·자유	38,240	7,066	45,306	18.3	122,130	11,279	133,409	1.3
무업자	159,116	308,635	467,751	-	5,899,865	8,949,923	14,849,788	-
합계	343,175	365,273	708,448		12,521,179	12,599,001	25,120,174	

(주1) 공무·자유는 자료에서는 ‘공무자, 자유직업자, 기타 직업자’라고 되어 있다.

(주2) 합계 숫자는 계산이 맞지 않는데 자료 그대로다.

(자료) 朝鮮總督府(1945), 『昭和19年 人口調査報告 其ノ二』, pp. 30-31, pp. 58-65.

3. ‘사상사건’에 관련된 재조일본인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어 조선 등 식민지에서도 시행되었지만, 그 이전 조선에서는 한국병합 이전 대한제국의 법률로서 제정된 보안법(保安法), 그리고 3·1운동에 즈음하여 제정된 大正 8년(1919) 제령(制令)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이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을 단속하는 법령이었다. 그러나 보안법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었고 재조일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령 제7호는 일본인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년 판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여 검거된 일본인 수는 1920년 6명, 1921년 0명, 1922년 1명, 1923년 9명, 1924년 1명, 1925년 0명, 1926년 0명이었다. 조

선의 독립운동이 주로 단속 대상이었던 제령 제7호로 검거된 일본인은 17명이었는데, 어떠한 인물이 검거되었고 그 혐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조선의 독립운동에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 없이 협력한 것이 혐의였다고 추정된다. 다만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 제령 제7호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일본인은 없었다.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 기소되는 일본인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을 고찰 대상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 ‘사상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도 있었으므로 간단히 언급한다.

3.1. 조선방직 파업 뼈라 사건(1930년)

1930년 1월 부산 조선방직주식회사의 노동자 파업 시 辻登喜夫(26세, 과자판매)등이 뼈라를 산포한 사건. 辻과 中村忠(21세, 전차운전수견승) 외 일본인 두 명이 경찰 취조를 받았고 辻, 中村 및 조선인 한 명이 출판법 위반 혐의로 송검,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辻가 금고 6개월, 中村가 금고 3개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辻登喜夫는 뒤의 <표 4>에 나타나는 대로 1932년에 부산적색노조건설협의회에 관련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3.2. 해주고보맹휴사건(海州高普盟休事件, 1931년)

해주고등보통학교에서는 광주학생운동 이후에도 동맹휴학 등의 학생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1931년 10월에 학생들이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라”, “희생자를 절대로 내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하였다. 학교 측의 강경한 태도에 반발한 학생들이 교사 내의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일으킨 것이 폭력행위취체령 위반, 건조물 손괴죄에 해당되어 조

선인 학생 11명, 일본인 학생 2명(山崎仲英 등)이 재판에 회부되어 최고 금고 8개월의 판결을 받았다.¹⁰⁾

3.3. 부산창기선동사건(釜山娼妓煽動事件, 1932년)

1932년 총독부 수산시험장 고원(雇員) 多々良橋雄(22세, 静岡焼津 수산학교 졸업)가 부산 마키노시마(牧の島) 직공의 궁핍한 생활 상태, 창기의 비참한 생활 상태를 보고 “노동자여, 눈을 뜰 시기가 왔다”, “8월 1일 반전(反戰)데이” 등을 쓴 뼈라 4종을 작성하여 뿌린 사건으로, 多々良은 출판규칙 등 위반으로 금고 2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¹¹⁾

3.4. 비밀결사 RS회 조직사건(1932년)

도쿄 영학숙(英學塾) 학생 稻葉君子(22세,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간사·수사관 稻葉岩吉의 장녀), 시모노세키(下関)의 매광여학원(梅光女學院) 전문부를 졸업한 高木とし(23세, 경성의 유력자산가 高木德弥의 8녀) 등 일본인 여성 20명이 좌담회·회독회(回讀會)를 열고 비밀결사 RS회를 조직하려 한 사건. 체신국 사무원 등 직업부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어떤 외부적 활동으로 인정받은 사실 없이 연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중략) 무의식 분자에 의해 구성된 조직체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훈계·석방되었다.¹²⁾

10) 伊藤憲郎(1932), 「朝鮮に於ける内鮮人提携に依る共產主義運動」, 『思想月報』 2-4. 다만 『동아일보』 1931년 12월 15일자에는 기소된 일본인 학생은 1인(山崎仲英)으로 되어있다.

11)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1932), 『思想月報』 2-9.

12)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1932), 『思想に関する情報 4』, 東大門警察署長, 「婦人を一団とする秘密結社RS会検挙に関する件」(1932. 9. 24).

4.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검거된 일본인

이하에서는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사건에 한하여, 일본인 검거자 및 기소자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일본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표 2>에 나타나듯이 1925년부터 1932년까지 8년 간 조선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에 의하여 검거된 인원은 합계 11,726명이며 그 가운데 일본인은 53명이었다. 기소된 사람은 3,511명이며 그 중 일본인은 28명이었다. 일본인은 검거자 중 겨우 0.5%, 기소자 중에서는 0.8%의 비율만 차지하였다. 1930년 시점에서 총인구 중 일본인 비율 2.5%에 비하면 치안유지법에 의한 검거자, 기소자가 극히 적은 것은 확실하지만, 종래 생각된 것보다는 많다고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김정일 논문에서 이용한 자료는 『思想彙報』 제8호(1936년 9월)에 게재된 「기왕 10년 간에 있어서의 치안유지법 위반건수, 인원, 연도, 청별 조사」다. 이 자료에는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치안유지법에 의한 일본인 검거자, 기소자 등 숫자가 <표 3>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검거자(검사국 수리 = 송검)는 89명, 기소자는 33명이다.

각종 자료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 새로 작성한 것이 <표 4>다. <표 4>에 의하면,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치안유지법에 의한 검거자는 58명(연 59명), 기소자는 34명이다. <표 4>의 대상 시기는 <표 2>보다 2년 길어서 <표 2>에 제시된 검거자, 기소자 수보다 약간 많으나 두 표에 제시된 숫자는 거의 일치한다. 한 편 <표 3>은 대상 기간이 길어 10년 간 일본인 검거 사건이 21건, 검거자 89명이고 기소자는 18건에 3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숫자로 본다면 검거자 수에 있어서 <표 4>는 완전하지는 않으나, 기소자에 관해서는 <표 2>, <표 3>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4>에 기재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에서의 일본인 관련 치안유지법 사건을 분석, 검토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표 4>에 의거하여 일본인이 관련된 검거 사건에 대한 경

〈표 2〉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민족별 인원

		검사수리 (매년 새로 수리한 수)	기소	불기소	기타	既濟 합계	未濟
1925	朝鮮人	88	33	55		88	
	日本人						
1926	朝鮮人	378	159	214	3	376	
	日本人	4	2	2		4	
1927	朝鮮人	279	135	136	6	277	2
	日本人						
1928	朝鮮人	1,415	494	703	147	1,344	73
	日本人	3	2	1		3	
1929	朝鮮人	1,279	447	765	133	1,245	7
	日本人	1		1		1	
	外国人	2		2		2	
1930	朝鮮人	2,126	553	1,452	59	2,064	68
	日本人	6	5	1		6	
	外国人	1		1		1	
1931	朝鮮人	1,727	651	1,005	50	1,706	77
	日本人	28	8	19	1	28	
1932	朝鮮人	4,380	1,011	2,899	501	4,411	45
	日本人	13	11	2		13	
계	朝鮮人	11,670	3,483	7,229	899	11,611	271
	日本人	53	28	26	1	55	
	外国人	3		3		3	
총계		11,726	3,511	7,258	900	11,669	-

(자료) 拓務省(1934), 「治安維持法去改正委員会提出資料」(外務省外交史料館 外務省茗荷谷研修所 旧蔵記録A門「治安維持法去改正問題一件 / 拓務省關係資料」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05014017700).

(비고1) ‘外国人’의 경우 1928년 러시아인 2명, 1930년 미국인 1명.

(비고2) ‘치안유지법과 다른 죄(예를 들어 강도, 소요, 방화, 살인 등)와 병합 관련 등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죄를 중하게 하여 처단된 것에 있어서는 본 표에 기록하지 않는다’

〈표 3〉 일본인 관련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건수·인원

	수리		기소		불기소		기타		계		검사국 별 일본인 검거수·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1926	2	4	1	2	1	2	-	-	2	4	대구 2건 4인
1927	-	-	-	-	-	-	-	-	-	-	
1928	2	2	1	1	1	1	-	-	2	2	신의주 1건 1인, 대구 1건 1인
1929	-	1	-	-	-	1	-	-	-	1	광주 1건 1인
1930	2	6	2	5	-	1	-	-	2	6	경성 2건 5인, 광주 1인
1931	3	29	3	8	-	20	-	1	3	29	경성 2건 25인, 함흥 1건 4인
1932	7	13	7	11	-	-	-	-	7	13	경성 2건 5인, 평양 1건 2인, 대구 2건 3인, 부산 2건 3인, 광주 1인
1933	3	32	2	4	1	29	-	-	3	32	경성 2건 15인, 함흥 1건 16인 (기소 1인, 불기소 15인)
1934	2	2	2	2	-	-	-	-	2	2	함흥 1건 1인, 전주 1건 1인
1935	-	-	-	-	-	-	-	-	-	-	
합계	21	89	18	33	3	55	1	1	21	89	

(자료) 『思想彙報』 제8호(1936년 9월) 「既往10年間に於ける治安維持法違反件数, 人員, 年度, 序別調べ」.

찰의 보고문서나 재판소의 판결문, 그리고 당시의 일본어신문, 조선어신문 기사를 이용하여 이들을 유형화한 다음,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운동에 참여한 일본인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표 4> 이외에 일본인이 관련된 치안유지법 사건으로 ‘진우연맹(眞友聯盟)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1926년 8월경 대구에 있던 조선인 아나키스트들이 검거된 사건이었지만, 도쿄(東京) 재주 일본인 두 명(栗原一男, 椋本運雄)도 관련 혐의로 검거, 기소되었다. 예심종결결정서에 따르면 栗原, 椋本를 포함한 13명은 “현대 사회조직을 파괴하고 모든 권력 지배 관계 및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 절대 자유 평등의 신사회 실현을 몽상하는 무정부주의적 사상을 품은” 자이며 조선의 무정부주의단체와 일본의 단체를 ‘결합통일’하고 ‘파괴적 직접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혐의로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하여 재판에 회부되었다. 栗原 등이 대구에서 조직된 진우연맹 구성원들에게 도쿄의 흑색청년연맹(黑色靑年聯盟) 가입을 권유한 점이 양자의 ‘결합통일’의 증거로 간주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栗原와 椋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조선인 피고의 최고형은 징역 5년). 그러나 栗原와 椋本는 도쿄에서 흑색청년연맹을 조직한 행위는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으나, 조선에서의 활동이 용의점이 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재조일본인의 사회운동을 검토 대상으로 하는 본 논문에서는 진우연맹 사건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또한 <표 2>, <표 3>에 따르면 1928년에 일본인 두 명 혹은 세 명이 검거되었으나, 이는 진우연맹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검거된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본 논문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재조일본인이 관련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일본인이 검거된 사건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5. 재조일본인 관련 사건의 유형

<표 4>에 나타나듯이 재조일본인이 관련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은 19건이었다. 이들 사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유형화를 통하여 이들 사건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일본인 개인에 의한 운동

일본인 그룹의 활동이 아닌 한 명의 인물이 한 활동으로 <표 3>의 B만이 해당한다. 이 사건은 경성의 영화관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합리화 절대 반대” 등의 삐라를 배포한 일본인 한 명이 검거된 사건이다.¹³⁾ 결사를 단속 대상으로 하는 치안유지법이 이 사건에 적용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S도 조선인 관련자가 없는 三宅鹿之助만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재유(李載裕) 등에 의한 조선공산당 재건 활동에 관련된 사건이므로 일본인 단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없어 유형 ③에 속한다.

② 일본인 주체의 운동

일본인만 혹은 관련자의 대부분이 일본인인 동시에 운동 주체가 일본인인 사건으로 D, F, G, H, J, M, P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G, M, P는 일본인 검거자보다 조선인 검거자가 많으나, 이는 여러 개의 활동 그룹을 1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여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F는 검거자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보일 정도로 재조일본인을 조직

13) 『경성일보』 1930. 7. 1. 辻 외에 일본인 검거자가 1명 더 있으나 주범은 辻였다.

대상으로 한 ‘비밀결사’ 사건이었다. 조선인 관련자도 2명 있으나, 조선인을 특별히 조직 대상으로 하였던 흔적은 없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에 근무하는 고원(雇員), 용인(傭人)¹⁴이 다수 검거된 것이 특히 주목된다. 후술하겠지만 경찰 당국은 <국철현업원조합>(國鐵現業員組合) 조직을 지향한 움직임으로 파악하였다.

D는 조선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 및 사범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 ‘내지’(内地)의 신흥교육연구소 활동과 연락하여 교원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 운동이다. 중심인물인 上甲米太郎은 조선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일본인들에게도 접촉했지만 호응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일본인 중 두 명은 도쿄 거주자로 재조일본인은 아니었다.

H도 일본 ‘내지’의 프롤레타리아 과학연구소 지국을 대구에 두고자 한 활동으로 일본인 검거자보다 조선인 검거자가 많으나 운동 주체는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J는 판결문 등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범인 米川秋穂가 일본인 노동자 및 조선인 노동자들과 접촉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던 사건이다.

G는 조선인 검거자도 많지만, 경성제국대학의 일본인 학생을 중심으로 한 독서회가 운동의 시작이 된 사건이다.

M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등에 근무한 일본인이 맑스주의 연구 그룹을 만들고, 반제국주의운동을 전개하려고 조선인에게도 권유한 사건이다.

P는 직공 혹은 사무원으로 일하는 일본인이 <오르그(オルガナイザー, 오거나이저) 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맑스주의 연구 활동을 하였는데, 조선인과 함께 반제동맹(反帝同盟)을 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사건이다. 반제동맹 활동에서는 조선인 관련자가 주도하고 있던 것 같으나, 일부

14) 행정기관의 비정규 종업원으로 고원은 주로 사무직, 용인은 현업직에 종사했다. 모두 일급제였다.

일본인 관련자도 이에 동조하여 활동하였다.

위 H, G, M, P 사건들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일본인 검거자 대부분이 조선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조선에서 자란 이들이라는 것이다. G의 검거자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H, M, P 경우는 조선의 상업학교나 중학교에서 공부한 일본인들이 동창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사회운동에 관여한 사례였다.

③ 조선인 주체의 운동에 참가

조선인에 의한 노동조합운동, 학생운동, 반제동맹운동 등에 재조일본인 개인이 참가한 사건. A, C, E, I, K, L, N, O, Q, R, S, T이며 건수로는 유형 ②보다 많다. 이 유형은 조선인이 중심이 된 운동이며 운동 방침의 결정 등도 조선인이 했기 때문에 이에 참가한 일본인은 운동 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본인 관련자는 1명 내지 2명을 넘지 않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재조일본인에게 어떤 종류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처지에 조선인의 사정을 겹쳐서 파악하는 인식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에는 1933년의 검거자수가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함흥검사국이 다른 사건에서 16명이 검거된 것이 큰 요인이었다. 검거자 대부분은 磯谷季次 등이 검거된 적색노동조합 재건협 사건(K)에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해당 사건(<혁명적노동조합조직운동사건>이라는 명칭도 있다)의 판결문에는 磯谷가 움직인 일본인으로 羽田野幸晴, 河野利一, 松村義士勇(松村義士男의 오기), 前田金作 등 다섯 명의 이름이 기재되고 있다. 흥남경찰서는 해당 사건 검거자 400명 이상 중 17명의 조선인과 磯谷 및 河野利一, 羽田野幸晴(羽田野幸晴의 오기인 듯) 3명의 일본인 등 합계 20명을 함흥검사국에 송치했다.¹⁵⁾ 磯谷의 회고록에 의하면 서너 명의 ‘일본인 동지’ 중 前田金作이 지도자가 되어 소비조합을 결성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검거된 松村義士男는 일본 패전 후 磯谷와 더불어 조선공산당 함흥시당부 일본인부를 조직하여 일본인들의 귀국 촉진에 노력했다.¹⁵⁾ 아마도 磯谷 외에 열 명 정도의 일본인이 검거되었으나, 기소된 사람은 磯谷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磯谷가 ‘동지’로 기록하고 있는 前田, 松村가 기소되었는지 당시 자료로 확인할 수 없기에 두 명은 <표 3>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 관련자가 있다는 점에서 K 사건은 유형 ③ 중에 이색적인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유형은, 형벌의 경중과도 관련되어 있다. 유형 ②의 사건 중 D, F, H, J, M, P에서는 기소된 일본인 중 다수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그들은 ‘비밀결사’의 중심인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유형 ③의 사건에서 일본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집행유예인 것이 많다. A의 柴田健助, E의 馬場正雄, 守田哲郎, K의 磯谷季次, L의 辻登喜夫, S의 三宅鹿之助는 실형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기소자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일본인이 중심이 된 운동과 조선인 중심의 운동에 참가하는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재조일본인 관련자의 의식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비밀결사’ 활동에 재조일본인이 참가, 참여한 것은 무엇 때문이며 그 동기나 배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관련자 다수가 식민 지배자인 일본인 중에서도 하층에 속한 노동자라는 것이다. 직공·직공견습, 고원·용인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일하였고 급료도 적은 노동자였다. F, H, K, M, P

15) 『조선중앙일보』 1933. 11. 22.

16) 磯谷季次(1980), 『朝鮮終戰記』, p. 18; 磯谷季次(1984), 『わが青春の朝鮮』, p. 108.

사건 검거자의 다수가 이와 같은 하층 노동자였다. F의 중심인물인 伊藤政雄는 만철보선구(滿鐵保線區)에 근무하던 아버지가 순직하자 일본 ‘내지’로 가서 동양대학(東洋大學)에 재학하던 중 크로포트킨의 사상 등을 접하고 조선에 돌아와 철도국에 근무하는 의형(義兄)의 신세를 졌는데, “늘 용돈이 부족한” 생활이었다고 한다.¹⁷⁾ M의 日比野勇, 宇都宮太郎는 “모두 일찍 양친 혹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사별하고”, “어려서부터 생활의 힘들음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고, 재조일본인 중에서도 중하층에 속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중등교육은 일본 ‘내지’가 아니라 조선에 있는 학교에서 받았다. A의 柴田健助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각지를 유랑하며 생활하고, 궁핍한 현대 사회조직에 결함이 있다는 불만을 품고 공산주의에 공명하는 자”로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¹⁸⁾ G의 중심인물 市川朝彦는 경성제국대학 학생이었는데 “아버지는 조선총독부 전매국 고원, 어머니는 공립 보통학교 훈도(교원)로 봉직하고 있고 동생은 용산중학교 제5학년, 여동생은 경성제일고등여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며, 가계가 빈곤하기 때문에 대학 입학 후 淺野 장학자금 매월 20원을 받으면서 면학하고 있었다.”¹⁹⁾

17) 경성지방법원 검사국문서(1931), 『思想に関する情報 1』, 本町警察署長, 「秘密結社木曜会および日常闘争同盟事件検挙に関する件」(1931. 10. 16).

18) 「대구복심법원판결」(1930. 3. 11). 이하에 인용한 판결문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 한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에 포함된 것이다.

19) 森浦検事(1931), 「市川朝彦の感想録に就て」, 『思想月報』 1-9. 市川朝彦가 받은 淺野 장학금은 조선토지경영 주식회사 등을 경영하고 경성부협의회 의원이기도 했던 淺野太三郎이 사재 10만 엔을 내서 1929년에 설립한 재단법인 淺野 육영회에 의한 장학금을 가리킨다. 일본인·조선인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우수 학생(중등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1931년도 신규 수급자는 조선인 14명(고등교육기관 5명, 중등교육기관 9명), 일본인 14명(고등교육기관 5명, 중등교육기관 9명)으로 합계 28명이었다. 일본인 14명 가운데 市川朝彦도 포함되었다[김자중(2019), 「일제 식민지기 재조일본인의 장학단체의 설립과 운영 — 아사노 다사부로(淺野太三郎)의 천야육영회(淺野育英會)를 중심으로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4-2]. 김자중은 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채용된 이는 20~30%로 ‘경제적 하위계층’에 속하고 ‘사상 문제’가 없는 학생이었다고 밝혔다.

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코 유복한 가정환경은 아니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인 관련자의 절반 정도가 조선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조선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자료는 별로 없으나, 중등학교(중학교나 상업학교 등)까지의 교육을 조선에서 받은 경우는 조선에서 자랐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58명의 검거자 중 조선 출생·성장으로 볼 수 있는 자는 18명이다. 또한 경성제대 학생의 절반 이상은 조선 내 중학교 졸업자²⁰⁾이었으므로, 그들을 조선 출생·성장으로 포함한다면 26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된다. 기소자(<표 3>의 판결란에 기재가 있는 자)만 본다면 34명 중 16명이고 경성제대 학생을 포함하면 24명이다(전주사범학교 졸업생인 Q-55를 포함).²¹⁾ G의 성대(京城帝大)반제동맹사건이나 H, M, P 사건의 검거자의 다수는 조선 출생·성장으로 보인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사건에서는 학교 동창생이라는 관계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²²⁾.

그들은 조선에 대한 애착도 느끼고 있었으며, 조선인을 대등한 인간으로 보는 감각을 가진 자도 적지 않았다. 목요회 사건으로 검거된 船崎徳太郎은 시지(詩誌) 『赭土』를 1930년 3월에 간행하였는데, 「창간사」에서 “우리들은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성장하고 조선의 공기 중에 살고 있

20) 1924년 예과 입학생은 조선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내지” 중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조선인이 각각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으나, 그 후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비중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내지’ 중학교 출신자가 감소했다. 즉 일본인 입학자의 반수 이상은 조선의 중학교 졸업자였다[稲葉繼雄(2005), 「京城帝国大学予科について」, 『大学院教育学研究紀要』 7, 九州大学, pp. 45~46].

21)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서대문형무소 수형자 카드에 따르면 치안 유지법에 의한 일본인 기소자 중 출생지가 기재되어 있는 자는 10명으로, 그 중 3명(菊池輝郎, 宇都宮太郎, 執行裕)이 조선 출생이다.

22) 관계자의 교육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F-12, G-28, M-45, M-46, P-50, P-52, P-53, P54 등 용산중학교 출신이 눈에 띄는 점이다. 용산중학교는 가장 엘리트교인 경성중학교 다음 가는 위치였지만, 조선총독부 관료 자제 등이 많은 경성중에 비하면 사회계층이 낮은 재조일본인 자제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한 검토는 금후의 과제로 삼겠다.

다. 조선은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쓰고 있다.²³⁾ G의 성대반제동맹사건 중 심인물 市川朝彦는 취조 과정에서 썼던 「감상록」(感想錄)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학교에서는 아무리 해도 내지인과 조선인은 감정적으로 딱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이상하게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신(愼弦重), 김(金正中)과 함께 연구하는 것은 그냥 제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중략) 조선인과 내지인이 감정적으로도 일치할 수 있는 것은 맑스주의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²⁴⁾

市川는 조선어를 배워 조선인과 깊이 교류하려고 하였다. 조선 출생은 아니었으나 교원으로 오래 조선에서 생활하였던 上甲米太郎도 조선어를 열심히 배우고 또 조선복을 입고 여행을 하기도 하였다. 上甲은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복을 입어보고 처음인 여행. 모두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었다. 내지에서도 숙부들은 그래야 조선인이 되어 조선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해주셨다. 모든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형사들에게 조사 받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조선복이었기 때문에 순사들에 취조 당한 것이 전후 10회가 되었다.”²⁵⁾ (1927년 1월 일기)

上甲가 가르친 조판출(趙判出)은 경남 함안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 사범학교에 진학하여 菊池輝郎와 친해졌으며, 함께 上甲의 활동을 지지하고자 하였다. 菊池는 조선에서 보통학교 교장을 역임한 아버지를 두었으며, 함북 청진심상소학교를 졸업한 후 경성사범연습과에 입학한 말하자면 ‘식민자 2세’였다.²⁶⁾

23) 『조선신문』 1930. 3. 1.

24)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1931), 『思想月報』 1-9.

25) 上甲まち子 外 著(2010), p. 141.

26)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1932), 「教育労働者組合事件の判決」, 『思想月報』 2-9.

세 번째로 1930년 전후 일본과 조선에서 사회운동이 고양된 것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A-1, E-8, F-20, P-50, P-52의 경우처럼 일본 등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관여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한편, 일본에서 중등교육·고등교육을 받던 중에 사회주의 문헌에 접할 기회를 가졌던 사람도 있다. 물론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에 조선에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점이 재조일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재조일본인에 의한 사회운동의 배경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였다. 일본인 주체의 운동의 경우, 관련자가 조선에서 태어난(또는 조선에서 자란) 20세 전후의 청년인 것이 눈에 띈다. 오랫동안 조선에서 생활하고 교육도 조선에서 받았던 자들이 깊이 결속한 것이 그 배경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일본인 사회 중에서 중하층에 속한 가정환경, 노동환경 등으로 인하여 식민지 사회의 모순에 눈을 돌리고자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7. 식민지 해방에의 공감

여기에서는 유형 ②의 일본인 주체의 운동(D, F, G, H, J, M, P)에서 식민지 해방이라는 과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술한 대로 유형 ③의 경우, 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조선인들은 식민지 해방을 자명한 과제로 여겼기 때문에 이에 참가한 일본인도 그에 공명·찬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그들이 주체적으로 식민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자료적 제약도 있어 확실히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

유형 ②의 자료에는 조선인의 활동도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본인이 관여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운동의 양상을 기록해 두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민지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주목하겠다. 식민지 사회에서 생활하는 일본인이 중심이 된 운동에서 식민지 문제가 어떻게 위치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재조일본인의 운동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로 경찰의 보고문서나 판결문 등, 지배 당국의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7.1. D 교육노동자조합사건(上甲米太郎 등)

경상남도에서 보통학교 교원·교장으로 근무한 上甲米太郎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조선인을 대등한 존재로서 대우하였고 식민지 사회의 모순에도 관심을 가지던 중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제자 조판출(趙判出)에게 쓴 편지에서 上甲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남산(南鮮)에서 면 수매(收買)가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면조기(棉繰機)나 직물기(織物機)까지 빼앗고 저렴한(저들이 말하는) 오사카(大阪)제 면직물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다.”²⁷⁾

이러한 인식을 지니게 된 上甲는 일본 ‘내지’의 신흥교육연구소와 연락하여, 기관지 『新興教育』을 조선에서 널리 보급하려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교원 대부분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조선인 교원 몇 명의 동조자를 얻는데 그쳤다. 上甲는 조판출에게 쓴 편지에, “어린 동지는 잘 자라고 있다. 기쁘게도 처음으로 조선인 교원 동지 3명과 이야기했다. 여기에서 경남의 조선인 중에 지기(知己)를 얻은 셈이다. 내지인 쪽은 미 적지근해서 안되겠다”고 쓰고 있다.²⁸⁾ 그리고 上甲는 조선인 운동과의 제휴를 장래의 목표로 가지게 되었다. 신흥교육연구소의 西村節三 앞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上甲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교원조합은 조선에서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현재 『신흥교육』

27) 上甲まぢ子 外 著(2010), p. 141.

28) 上甲まぢ子 外 著(2010), p. 141.

독자 중에서 진짜를 골라내어 큰일의 일부분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그리고 조선인 사상단체와 이면에서 손을 잡고 싶습니다. 꿈일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오래 생각해온 것입니다, 이제 와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생각입니다.”²⁹⁾

上甲가 <교육노동자조합>의 결성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경성사범학교 학생인 菊池輝郎의 경우는 신흥교육연구소의 문헌을 읽고 <교육노동자조합>의 조직화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흥교육연구소에 의한 <교육노동자조합> 행동강령은 교원의 대우 개선, 교육제도 전반의 개선, 정치적 요구에 관한 92개 항목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는 “61. 식민지에서 제국주의적 특수교육 반대”, “91. 식민지 ‘독립’ 운동 옹호”라는 슬로건도 내걸고 있었다.³⁰⁾ 이에 대해서 上甲나 菊池가 어떤 정도로 이해하고 대처하고자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7.2. F 목요회(木曜會) 사건(伊藤政雄 등)

철도국 경성 공장의 일본인 종업원들이 “혁명이론을 연구”하는 목요회를 결성하고 나아가 조선국철 현업원(現業職)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으며, 철도국의 조선인 종업원 중에서도 목요회에 참가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緒方, 植村, 矢野 등은 <일상투쟁동맹>을 결성하고 철도국 종업원의 노동 상태 등을 조사하려다가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시도하였고, 다수 노동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움직임이었지만, 관련된 인물들이 식민지 해방의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단 森尻進가 쓴 「신극단(新劇團) 설립에 대하여」라는 문서에서, “일본제국주의적 부르주아계급의 필사적 공격에 대한 전 일본 아니 전 식민지 민

29) 上甲まぢ子 外 著(2010), p. 141.

30) 上甲まぢ子 外 著(2010), p. 141.

족의 대항 투쟁 (중략) 다가올 전 조선과 일본의 프롤레타리아어”라고 하였을 뿐이다. 일본인 관련자가 조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³¹⁾

7.3. G 성대반제동맹(京城帝大反帝同盟) 사건(市川朝彦 등)

경성제국대학에서는 학과, 학년별로 독서회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 중 1년 독서회에 속한 市川朝彦, 桜井三良, 平野而吉 등(모두 1929년 예과 입학, 법문학부 학생)이 학내 문제(학우회 해산, 수업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반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관련된 법문학부 학생 신현중(慎弦重)은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표로 강진(姜進), 이종림(李宗林) 등과 연락하여 1931년 4월 <조선공산당 성대 야체이카>를 조직하였고, 市川도 이에 참가하였다. 같은 달 일본인 학생, 조선인 학생 합동으로 <성대반제부>(城大反帝部)를 결성하고, 신현중과 市川가 책임자가 되었다. 다만 신현중이 관련되어 있던 조선인 노동자 조직 <적우회>(赤友會)에는 市川 등 일본인 학생은 관여되어 있지 않다. <성대반제부>의 市川, 신현중 등은 만주사변 발발 시 ‘반전격’(反戰檄)이라고 하는 삐라를 대량으로 인쇄하여 경성 시내에 배포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검거되었다. 이 삐라에서는 만주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여 “프로혁명전의 준비”를 호소하고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발췌).

- 一. 노농형제 도살(屠殺)의 제국주의 전쟁 절대 반대
- 一. 일군(日軍) 중국 출병 반대
- 一. 반제국주의혁명 만세
- 一. 일중(日中) 노농계급과 결합하자

31) 경성지방법원 검사국문서(1931), 『思想に関する情報 1』, 本町警察署長, 「秘密結社木曜會竝に日常闘争同盟事件檢挙に関する件」(1931. 10. 16).

- 一. 조선독립 절대완성 만세
- 一. 만국 프롤레타리아 굳건히 단결하자

“조선독립 절대완성 만세”를 내건 이 뼈라는 신증현이 기초한 것으로 일본인 학생들이 이러한 과제를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市川朝彦은 ‘반진격’에 찬동하여 桜井三良와 함께 뼈라를 인쇄, 배포하였으므로 그 내용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市川, 桜井 이외의 일본인 학생은 경성제대 내에서의 운동에 주안점을 두었고 식민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³²⁾

7.4. H 대구 프롤레타리아 과학연구소사건(佐々木隆)

대구상업학교를 졸업한 佐々木隆, 瀬戸口茂 등이 일본 프롤레타리아 과학연구소의 지부를 조직하고자 대구상업학교의 조선인 학생들에게 공작을 한 사건이다. 재판은 대구사범학교 교원 玄俊赫이 지도하는 학생 조직 사건과 병합되었는데, 두 사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931년 7월, 佐々木, 瀬戸口, 徐五龍 등은, “만보산(萬寶山) 사건에 대한 조선인의 반항심을 제국주의로 향하게 하여, 제국주의의 본질을 폭로하는” 뼈라를 작성하고, “프로과학 확대강화 만세, 식민지를 해방하라, 소비에트 러시아를 지키자” 등의 뉴스를 인쇄하였다.³³⁾

32) 朝鮮總督府警務局長(1931), 「城大學生を中心とする秘密結社ならびに赤友會檢挙に関する件」(朴慶植編(1982), 『朝鮮問題資料叢書 7』에 수록); 「城大反帝同盟子審決定書」, 『동아일보』 1932. 8. 17~9. 4 (11회 연재);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1932), 「京城地方法院判決」(1932. 11. 24), 『思想月報』 2-9.

33) 「대구지방법원판결」(1932. 12. 2)(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7.5. J 평양전매국 적색노조사건(米川秋穂)

米川秋穂는 조선총독부 전매국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 직공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며 노동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고 공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매국에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직공들의 실정을 잘 알기에, 그들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하여 어떻게든 구제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³⁴⁾

米川가 조직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매국이나 평양부 전기과(電氣課), 그리고 양말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이었는데, 여기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米川는 조선어 팜플렛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1932년 2월의 회합에서는 山越龍이 기초한 “만몽(滿蒙) 사건에 대한 연구회 제안”에서는, 만주사변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만 일본인, 재만조선인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또 하나 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본국의 프롤레타리아의 침식(侵植)에 의한 혁명적 에너지의 완화책이다. 현재 내지인 20만, 조선인 약 100만이 거주하고 있다. 더구나 여기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100만의 재만 조선인 농민은 어떻게 만주로 왔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해 나라에서 쫓겨나도 여전히 그 부하가 되어 혹사당하고 있다. 만보산 사건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가증스러운 그들은 이를 역이용하여 터무니없는 제국주의 전쟁을 만들어냈다.”³⁵⁾

이 문서에서는 재만조선인의 역사적, 현실적 상황을 인식하면서 반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은 재조일본인 자신의 역사나 현상에 대한 이해와 통하는 면을 갖고 있었다.

34) 『경성일보』 1934. 6. 3.

35) 朝鮮總督府警務局(1932), 「滿洲事變に対する反戰運動の概況」(1932. 12)(공훈전자사료관).

7.6. M 사회주의 청년동맹 경성지구위원회 결성준비회 사건(토요연구회 사건)(日比野勇 등)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 근무하는 日比野勇, 경성부청에 근무하는 宇都宮太郎 등은 맑스주의를 연구하는 그룹을 만들고 뼈라를 뿌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총독부에 근무하는 급사(給仕) 등을 규합하여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합법단체로 활동하기로 하였으며 “내선인 급료 차별철폐” 등의 요구사항도 정했으나 참가자가 검거되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日比野 등은 반제운동전개를 위해 사회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하고자 하였고 이를 조선인들에게도 권유하였다. 다만 이 사건으로 검거되었던 십 수 명의 조선인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日比野 등의 운동은 확장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경무국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던 日比野, 같은 경무국 보안과에서 급사를 하고 있던 강준원(姜駿遠)이 경찰의 내부문서를 가지고 나와 조선의 민족운동, 공산주의운동의 추이에 관한 지식을 얻어 활동 방침을 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1932년 7월에 작성된 「8.1데이(국제적색데이)에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서 “정치범 즉시 석방, 중국에서 손떼기, 반소(反蘇)전쟁 절대 반대, 일선(日鮮) 프롤레타리아 제휴만세”를 호소하며, “조선의 완전한 자치독립만세, 조선공산당만세”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같은 달 발행된 기관지 『노동청년』 창간호에서는, 執行裕가 「진재(震災)기념일 및 국제청년데이를 맞이하다」, 김학헌(金學憲)이 「잊혀진 9월 1일」(조선어)을 썼다. 간토대지진(關東大震災) 당시에는 조선인 학살을 비판하면서 일조(日朝)노동자의 연대를 호소하였고 “조선총독부 무단정치 절대 반대, 조선공산당 강화 만세”를 주장하였다. 식민지 문제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⁶⁾

36)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1932), 『思想に関する情報4』, 東大門警察署長, 「秘密結社社會主義青年同盟京城地區委員會結成準備會事件檢挙に関する件」(1932. 9. 22);

7.7. P 반제동맹(反帝同盟) 경성지방지부 조직 사건(토요연구회 사건)
(和田献仁 등)

용산중학교를 졸업한 和田献仁은 도쿄에서 전협(全協)활동을 한 후, 조선에 돌아와 경성교외궤도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横山礼太도 용산중학교 출신으로 도쿄에서 자유노동자로 일하다가, 조선에 돌아온 후로는 경성곡물상조합 사무원을 하고 있었다. 1932년 9월경에 이들은 경성측후소(京城測候所) 주수 岩崎富士男, 체신국 용인(傭人) 松浦良行와 함께 <오르그 연구회>를 조직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和田 등의 활동에는 2년 전 성대반제동맹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市川朝彦도 관계하고 있었던 것이 주목된다.

和田은 <오르그 연구회>와는 별도로 조정래(趙正來) 등 조선인과 반제동맹, 적색노조 결성을 도모하였다. 조정래나 이순근(李舜根)은 동덕여학교 교원인 이관술(李觀述) 그룹과도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和田 등의 일본인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和田, 조정래 등은 1932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범태평양 반제국주의 민족대표자대회에 제출할 메시지를 조선반제동맹 경성지방준비위원회 명칭으로 작성하였는데(초안은 이순근, 조정래가 집필), “조선민족은 일한합병(日韓合併)의 결과, 착취와 압박 때문에 극심한 생활난으로 위협받아 현재 빈사 상태에 떠돈다. 우리들은 이제 단호히 일어나 일본제국주의에 반대 항쟁하여 조선피압박민중의 해방을 실행할 것을 기도한다”는 내용이였다. 또한 1932년 12월에는 조선에서의 반제국주의운동 슬로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1932), 「京城地方法院判決」(1933. 2. 6), 『思想月報』 2-12.

1. 조선어본위의 교육 실시
1. 식민지 노예교육 반대
1. 국유임야의 민중공유
1. 전(全) 수리조합 농민관리
1. 조선 절대 독립
1. 재선(在鮮) 일본 군대 헌병 즉시 전부 철폐
1. 중국 만주 파견 일본 군대 및 군함 즉시 철폐
1. 전(全) 정치범 즉시 무죄 석방
1. 치안유지법 철폐(철폐)
1. 소비에트동맹 및 소비에트중국을 지키자
1. 일선중(日鮮中) 프롤레타리아 제휴 만세
1. 조선반제동맹 전국적 결성 만세

이처럼 식민지 해방의 과제를 명확하게 호소하는 구체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기초하였던 것은 조정래 등이었지만, 적어도 和田가 그에 찬동하여 활동하고자 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³⁷⁾

8. 마치며

이 글에서는 주로 1930년대 전반에 재조일본인이 참가, 관여한 사회운동(치안유지법이 적용된 ‘비밀결사’ 사건)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재조일본인에 의한 ‘비밀결사’ 활동은 극히 미약하였고, 식민지 지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식민지 지배를 자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37) 東大門警察署長(1933), 「朝鮮反帝同盟京城地方組織準備委員會檢挙に関する件」(1933.3.9); 京畿道警察部(1933), 「朝鮮反帝同盟京城地方組織準備委員會其の他檢挙に関する件」(1933.3.31). (모두 공훈전자자료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1934), 「경성지방방법원판결」(1934.12.20), 『思想彙報』 2.

이에 반발하여 저항하는 의식을 가졌던 점 — 다시 말하면 ‘식민주의’ 부정으로 연결되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점 — 은 중시되어도 좋지 않을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재조일본인 중 다수는 식민지 사회에서도 중하층에 속하는 ‘식민자 2세’였다. 식민지배를 아래로부터 떠받친 일본인 사회에 속했으나 우월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식민지 사회의 모순에 눈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식민지 사회의 현 상태를 변혁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식민지 해방’을 목표로 하여 의식적으로 조선인과의 연계, 연대를 도모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회운동에 참가하였던 이들 중에는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하여 식민지 사회의 엘리트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피지배자인 조선인을 대등한 인간으로 보고 함께 사회 변혁을 목표로 활동하고자 했던 사람이 소수이지만 존재했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 주목되고 있는 ‘탈식민주의’를 지향하는 재조일본인 2세의 문학적 영위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다.³⁸⁾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조선에서 낳고 자란 재조일본인 2세가 패전 후 일본에서 식민지배의 역사를 성찰하고 자기 부정을 포함하여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한 데서 의의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부 재조일본인 2세가 ‘탈식민주의’라고 부를 만한 의식을 식민지배 시기부터 품었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³⁹⁾

식민지배에 비판적인 시각을 품게 된 재조일본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당국에 의한 탄압과 ‘전향’으로 이끌려는 회유만이 아니었다. 재조일본인 사회로부터 배척되었고 모멸적인 언사 — ‘빨갱이’, ‘비국민’ 등 — 가

38) 이와 관련된 최신 연구로서 原佑介(2019), 『禁じられた郷愁 — 小林勝の戦後文学と朝鮮 —』를 들 수 있다.

39) 식민지기에 조선에서 자란 일본인으로서 식민지배에 회의적인 시점에서 소설을 집필한 대표적인 존재로서 中島敦를 들 수 있다. 경성중학교 졸업 후, 도쿄의 제일고등학교 재학 중에 발표한 「순사가 있는 풍경」(巡査の居る風景, 1929)은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선인의 시점에서 그린 작품이다.

그들에게 던져졌다. 가족도 마찬가지로 식민자 사회에서 백안시되었다.

검거된 이와 그 가족이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되었는지는 市川朝彦가 서대문 형무소 수감 중에 쓴 「감상록」에 적혀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추측할 수 있다.

(자신의 신조에 따라 활동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비탄에 빠질까, 그리고 어머니는 훈도(訓導)이므로 내 일이 사회에 알려지면 학교도 그만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어려운 집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동생들의 장래도 사회적으로 생활하기에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⁴⁰⁾

市川이 두려워한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市川의 불안과 공포는 다른 검거자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 일본 ‘내지’에 사는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이라는 국가에 충성을 바치고 ‘일본인일 것’을 강요받고 또한 스스로도 그것을 떠맡았던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식민지배에 거스르는 사회운동에 참여한 자가 받게 된 억압과 배척이 얼마나 컸을지는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압력 아래 ‘전향’을 밝히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

한편으로 磯谷季次, 上甲米太郎 등은 전향하지 않았고, 馬場正雄은 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三宅鹿之助는 대학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추방되었다. 그 외의 검거자들이 그 후 어떠한 생애를 보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본과 조선의 역사적 관계, 그 중에서도 식민 지배기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계 가운데 본 논문에서 다룬 재조일본인 사회운동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새롭게 인식되어 그 역사적 의미가 검토,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40) 『思想月報』 1-9, 1931. 12.

〈표 4〉 제조일본인 친인유지법 위반 사건

유형	사건 기호	검거 시기	사건명	송감자 (기소자)	인물 번호	성명	연령	직업	판결	주요 자료	비고
③	A	1929	대구학생 비밀결사사건	尹章赫 등 (29)	1	柴田健助	44	店員	7개월	判決文 ・ 新聞	「八幡製鐵所の 스트라이크에 전 술과 경침을 싸은 福本派 社 會主義者」(동아일보)1929년 8 월 8일)
①	B	1930	동양구락부 빼라 배포 사건	(1)	2	上野平雄	23	建具職	1년	新聞	교토(京都) 출생. 친리교 신자
③	C	1930	광주여학생 독서회사건	(11)	3	岩城靖子	20	光州女子高普 校 3년 退學	1년(집행 유예 5년)	判決文	
②	D	1930	교육노동자 조합사건	(5)	4	上甲米太郎	29	校長・ 昆明普校	2년	思想 月報 2-9	도쿄(東京) 거주
					5	山下徳治	39	教員・ 自由学園	2년		
					6	西村節三	25	事務員・新興 教育研究所	1년(집행 유예4년)		
7	菊地輝郎	18	学生・ 京成師範	1년(집행 유예4년)	조선 출생. 부친은 보통학교 교장. 청진소학교 졸업. 경성 사범연습과 재학 중.						
③	E	1931	조감직역 노조사건 (제1차 테로)	金鎭鏞 등 73(22)	8	馬場正雄	28	職工・朝鮮窒 素肥料工場	4년	新聞	全協系神戸海員 會新회 활동 이력. 1933년 8월 11일 함흥형 무소에서 병으로 사망.

유형	사건 기호	감거 시기	사건명	송감자 (기소자)	인물 번호	성명	연령	직업	판결	주요 자료	비고
③	E	1931	조일적색 노조사건 (제1차 테로)	9	9	守田哲郎	21	職工・朝鮮窒 素肥料工場	2년	新聞	시즈오키(静岡) 출생. 부친은 만철보선구 직원. 평양중학에 서 静岡중학교로 전학. 감시대 상자 카드에는 ‘加藤政雄’.
				10	10	伊藤政雄	27	雇員・ 鐵道局工務課	2년		
				11	11	市川重保	25	學生・ 京城帝大	2년(집행 유예 3년)		
				12	12	森尻 進	25	印刷業	2년(집행 유예 3년)		
②	F	1931	목요회 사건	13	13	木村 亮	24	傭人・鐵道局 會學機關区		警察 文書 新聞	용산중 졸업. 도시사(同志社) 대 예과.
				14	14	井出 允	22	傭人・鐵道局 京城工場			
				15	15	福山 昇	21	雇員・鐵道局 京切燭務			
				16	16	澤田秀雄	18	鑄物職工・ 朝鮮商工会社			
				17	17	船崎徳太郎	20	速記学研究生 ・詩人			

유형	사건 기호	검거 시기	사건명	송감자 (기소자)	인물 번호	성명	연령	직업	판결	주요 자료	비고
					18	高橋喜久雄	22	傭人・鉄道局 京城工場			
					19	岡田 弘	27	車掌心得・ 鉄道局京 城駅列車区			1927년 3월 출판규칙 위반으 로 벌금 50엔.
					20	廣瀬 進	26	学生・旅順工 大本料			1931년 4월 치안유지법 위반 으로 관동청범원 북감부에서 징역 2년(감행유예 5년), 상고 중(『思想月報』 10에 판결문)
②	F	1931	목요회 사건	20(3)	21	岡田美代子	30	營業主・バー 火の鳥		警察 文書 ・ 新聞	
					22	岡 泉	20	傭人・鉄道局 工場			카가와(香川) 출생
					23	緒方 彌	19	傭人・鉄道局 京城工場			
					24	植村周平	18	傭人・鉄道局 京城工場			경찰문서에서는 직업기재 없음.
					25	矢野 工	20	傭人・鉄道局 京城工場			고치(高知) 출생. 수원에 분가.

유형	사건 기호	검거 시기	사건명	송감자 (기소자)	인물 번호	성명	연령	직업	판결	주요 자료	비고	
②	F	1931	목요회 사건	20(3)	26	村井直彦	18	傭人・鐵道局 京城工場		警察 文書 ・ 新聞		
					27	新井勝次	20	傭人・鐵道局 京城工場				
②	G	1931	경성제대난계 동맹사건	23(19)	28	市川南彦	19	學生・京城帝 大法文學部	2년(집행 유예 3년)	思想 月報 2-9	부친은 전미국 고원. 용산중 졸업. 경성제대 예과 성적 2위	
					29	桜井三良	19	學生・京城帝 大法文學部	2년(집행 유예 3년)			
					30	平野而吉	20	學生・京城帝 大法文學部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1	北川精八郎	20	學生・京城帝 大法文學部				
					32	戸張光夫	22	學生・京城帝 大法文學部				
					33	堤 仙輔	23	學生・京城帝 大法文學部				
					34	土井丈爾	23	學生・京城帝 大醫學部				

유형	사건 기호	김거 시기	사건명	송감자 (기소자)	인물 번호	성명	연령	직업	판결	주요 자료	비고
②	H	1931	대구 프롤레타리아 과학연구소 사건	(7)	35	佐々木隆	20	印刷業· 大邱電報社	1년 6개월	判決文	대구상업학교 졸업.
					36	瀬戸口茂	19	事務員·慶北 蚕種業組合	1년(집행 유예 4년)		대구상업학교 졸업.
③	I	1932	대구사범학교 적화사건	(玄俊赫 등 9)	37	木村義人	22	學生· 大邱師範	1년(집행 유예 4년)	判決文	구미모토(熊本) 현립 미후네 (御附)중학 수료, 도쿄(東京)에 서 노동하던 중 조선으로. 대 구사범연습과에 입학.
					38	米川欣穂	27	新聞記者· 西鮮日報	3년		미토(水戸)중학 졸업.
②	J	1932	평양전매지국 적색노동자사건	10(5)	39	山越龍	23	雇員·平壤府 電氣課	2년(집행 유예 3년)	新聞	미토(水戸)중학 졸업.
					40	磯谷季次	26	職工·朝鮮榨室 秦肥料工場	6년		미토(水戸)중학 졸업.
③	K	1932	직색노동조합 재건협의사건	宋成寬 등 85(12)	41	羽田野幸晴		職工·朝鮮榨室 秦肥料工場		思想 黨報	시즈오카(静岡) 출생.
					42	河野利一		職工·朝鮮榨室 秦肥料工場			新聞
③	L	1932	부산직색노동 자살협의회사건	10	43	辻登喜夫	28		新聞		

유형	사건 기호	김거 시기	사건명	송김자 (기소자)	인물 번호	성명	인 령	직업	판결	주요 자료	비고
②	M	1932	사회주의 청년동맹 경성지구위원회 결성준비회사건 (토요연구회 사건)	18(4)	44	日比野勇	24	雇員・總督府 警務局図書課	3년	警察 報告 ・ 思想 月報 2-12	경성상업학교 졸업
					45	宇都宮太郎	22	雇員・京城府 庁学務課	2년		
					46	韓行裕	22	雇員・ 龍山精水所	2년		
					47	穗坂壽恵	19	記者・文筆社			
③	N	1932	경성적새노조 조직계획사건 (孔元樽 등)	孔元樽 등 39(13)	48	大場景美	24	職工・專売局 印刷工場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新聞	아미구치(山口) 출생. 경성사 범부속 소학교 졸업, 경성중학 중퇴.
					49	中尾勝	18	學生・ 晋州農校	1년(집행 유예 3년)		
②	P	1933	조선반제동맹 경성지구조직 사건(오르그 연구회 사건)	李觀述 등 43(8)	50	和田獻仁	23	職工見習・ 京城城外 軌道會社	3년	新聞 ・ 警察 報告	고지(高知) 출생. 용산중학 졸 업. 日大 중퇴. 도쿄(東京)에서 전협(全協) 활동.
					51	本田親男	24	學生・京城帝 大医学部	1년 6개월		
					52	横山礼太	24	事務員・京城 製物商組合	1년 6개월		
					53	岩崎富士男	26	京城制 使補助手			

유형	사건 기호	검거 시기	사건명	송감자 (기소자)	인물 번호	성명	연령	직업	판결	주요 자료	비고
②	P	1933	조선반계동맹 경성지부조직 사건(오르그 연구회 사건)	李觀述 등 43(8)	54	松浦良行	19	傭人・通信局 保険業務課		新聞 警察 報告	도쿄(東京) 출생. 출업. G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에 재 검거.
					28-2	市川南彦	21	店員・ 吉野軒介店			
③	Q	1933	진북교원 작화사건	(38)	55	桑原薫	26	訓導・ 井邑普校	1년(집행 유예 2년)	判決文	진주사범 졸업.
③	R	1933	원산중학교 독서회 등 조직사건	(17)	56	太田良平	24	会社員		思想 月報 4-5	1930년에 출판됨,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③	S	1933	영흥농민조합 재건사건	38(15)	57	小西稔	25	職工	2년	思想 集報4	
③	T	1934	三宅교수 작화사건	1(1)	58	三宅鹿之助	36	教員・ 京城帝大	3년	思想 集報2	오사키(大阪) 출생.

*성명의 짙은 색은 색은 조선 출생, 성장이라고 생각되는 자, 열은 색은 그 가능성이 높은 자

(비고1) 연명은 검거시점 또는 판결시점

(비고2) 판결란이 공백인 것은 기소유예 등

(비고3) 판결은 제1심 판결

(비고4) 대구 프롤레타리아 과학연구소 사건과 대구사범 적화사건은 병합된 판결이 나왔으나, 별도의 사건으로 보인다.

(비고5) 감시대상자 카드에는 ‘松尾三次 33세 무작’이 치안유지법 위반유죄로 기소유예 되었으나, 사건 내용이 불명이므로 제외하였다.

(비고6) 자료는 생략하였으므로 본문의 각주에 기록한 자료를 참조할 것.

참고문헌

【자 료】

『경성일보』.

『동아일보』.

『조선신문』.

『조선중앙일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문서, 『思想に関する情報』.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思想月報』 및 『思想彙報』.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版.

조선총독부(1945), 『昭和19年 人口調査報告 其ノ一』.

_____ (1935), 『朝鮮國勢調査報告 昭和5年 全鮮編』.

공훈전자자료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판결문』(<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拓務省(1934) 「治安維持法改正委員会提出資料」(外務省外交史料館 外務省茗荷谷研修所旧蔵記録A門, 「治安維持法改正問題一件 / 拓務省關係資料,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05014017700).

朴慶植 編(1982), 『朝鮮問題資料叢書7』.

【논 저】

新藤東洋男(1981), 『在朝日本人教師: 反植民地教育運動の記録』, 白石書店, 高麗博物館編.

磯谷季次(1984), 『わが青春の朝鮮』, 影書房.

_____ (1980), 『朝鮮終戦記』, 未来社.

_____ (1949), 『植民地の獄』, 郷土書房.

上甲まち子 外 著(2010), 『上甲米太郎: 植民地・朝鮮の子どもたちと生きた教師』, 大月書店.

井上學(2006), 「一九三〇年代日朝共產主義者の邂逅 — 三宅鹿之助と李載裕」,

『社会運動の昭和史』, 白順社.

園部裕之(1989), 「在朝日本人の参加した共産主義運動」, 『朝鮮史研究会論文集』 제26집.

古屋貞雄・三宅鹿之助・渡部学・佐藤勝巳(1966), 「暗黒下の日朝人民の連帯 — 昭和初期日本人先覚者の体験を聞く」, 『朝鮮研究』 제53호.

原佑介(2019), 『禁じられた郷愁 — 小林勝の戦後文学と朝鮮 —』, 新幹社.

김경일(2015), 「지배와 연대의 사이에서 — 재조일본인 지식인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 『사회와 역사』 제105집.

김자중(2019), 「일제 식민지기 재조일본인의 장학단체의 설립과 운영 — 아사노 다사부로(淺野太三郎)의 천야육영회(淺野育英會)를 중심으로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4 (2).

변은진(2018), 『자유와 평화를 꿈꾼 ‘한반도인’ 이소가야 스에지』, 아연출판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양지혜(2015), 「‘식민자 사상범’과 조선: 이소가야 스에지 다시 읽기」, 『역사비평』 제110집.

이소가야 스에지(1988), 『우리 청춘의 조선: 일제하 노동운동의 기록』, 사계절.

이애숙(2014),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소개」(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ia.html).

이준식(2006), 「재조(在朝) 일본인교사 죠코(上甲米太郎)의 반제국주의 교육노동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9집.

전명혁(2006), 「1930년대 초 코민테른과 미야케(三宅鹿之助)의 정세인식」, 『역사연구』 제16집.

전성현(2015), 「식민자와 식민지민 사이, 재조일본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역사와 세계』 제48집.

원고 접수일: 2020년 4월 16일

심사 완료일: 2020년 5월 5일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7일

要 約

1930年代前半における在朝日本人の社会運動とその 歴史的意味

水野直樹*

植民地支配期の朝鮮に居住する日本人は朝鮮人とは隔絶された生活環境の中で、植民地の支配者として存在していたが、1920年代末から1930年代前半の時期には治安維持法違反で検挙、起訴される日本人が僅かだけ見られた。在朝日本人の中にも職工・労働者として働く者が一定の比率で存在しており、社会的に低い階層に属する者もいた。また、朝鮮生まれ、あるいは朝鮮育ちの在朝日本人2世が増えていた。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朝鮮人と接する機会を持ち、朝鮮人を対等な存在とみなすと同時に、植民地社会の矛盾に目を向けて、それを解決しようとする者も現われた。

各種の資料によれば、1929年から1934年までの間に治安維持法違反容疑で58名の日本人が検挙され、そのうち34名が起訴された。これらの検挙事件は、日本人単独の活動、日本人を主体とするグループの活動、朝鮮人主体の運動への参加の3つ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これら検挙者の多くが職工、雇員・傭人などの中下層労働者であるか、経済的に困窮する家庭の育ちであったこと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

* 京都大学 名誉教授

これらの社会運動の中では、植民地支配に批判的な認識からその変革をめざす主張や日本の大陸侵略に反対する主張が掲げられることもあった。

在朝日本人の社会運動はきわめて微弱であり、植民地支配に影響を与えることもほとんどなかったが、植民地社会において支配者の地位に立つ在朝日本人の一部が植民地支配を批判・否定する活動を行なったという事実とその歴史的意味は、認識、確認されるべきである。